

2020년 4월 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과 장 이영구(054-912-0601), 사무관 김상욱(0612)/ 제공일: 4월 7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과수화상병 분포지역산 수분용 꽃가루 수입금지 - 미국산 수분용 사과꽃가루 수입검역 과정 중 과수화상병 검출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서 과수화상병 검출에 따라 과수화상병 분포지역산 사과·배 등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를 수입금지
 - 미국산 수분용 사과꽃가루, 수입검역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처음 검출(20.4.1)
 - 미국 등 과수화상병 분포 56개국산 사과·배·복숭아 등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금지(4.14 수출국 선적분부터)
 - * 과수화상병(*Erwinia amylovora*)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이며, 사과·배나무 등 식물에 피해를 유발하며, 미국·캐나다 등 전세계 56개 국가에 분포
- ◆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강화하고,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휴대품 검색과 불법 유통·판매 등 단속 강화
- ◆ 과수류 재배 농가에 정상적인 식물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불확실한 수입산 꽃가루는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, 이하 '검역본부')는 과수화상병(*E. amylovora*) 분포지역산 기주식물(사과 등)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(4.14 수출국 선적분부터)를 취하였다고 밝혔다.

- 검역본부는 ‘05.12월부터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며, 지난 ‘20.3.16. 미국에서 항공화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(3.83kg)의 검역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원인균이 검출(4.1)되어 폐기 조치하였다.

* 금년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 10건(중국 9, 미국 1) 중 9건 음성, 1건 양성(금번 검출)

- 이와 관련하여 수분용 꽃가루를 통한 과수화상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이 분포하는 미국 등 56개국산 사과·배·복숭아 등 기주식물(배나무아과,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)의 수분용 꽃가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.

- 또한, 검역본부는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하고,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·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·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국내 수요 성수기(4월) 사과, 배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꽃가루 유통·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한다.

-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“과수류 재배농가들에서는 식물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불확실한 수입산 꽃가루는 사용하지 말고, 꽃가루의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수입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검역본부로 신고(☎054-912-0616)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